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440
- 제 안 자 : 박기열 의원(찬성의원 29명)
- 제 안 일 : 2021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별지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에는 고유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사용하지 않고 앞 7자리만 기재하고 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별지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1. 6. 4. ~ 2021. 6. 11.) 결과 : 의견 없음.

<별지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			
신 청 자			우 측 표 생 략
소속(주소)	성 명	주민번호	

<별지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			
-----			우 측 표 생 략
-----	----	생년월일	

- 입법취지는 2011년 3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보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및 관리 개요>

- ◆ 포상금 도입·목적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부정방지 차원에서 도입**
- ◆ 지급대상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 대상: **지난년도 시세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 국장급(시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4급) 이상 관리직은 미지급
- ◆ 지급기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4조)
 - **일반 체납징수 포상금 (징수공무원)**

체납발생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징수액	1%	3%	5%
 - **결손 체납징수 포상금 (결손전담 시간선택제)**
 -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2019.12.31.공포)에 따라 기본공제액 조항 삭제
 - ▶ 소멸시효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대상 징수액의 4.3%를 지급

◆ 지급한도(「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

○ 일반 체납징수: 부과기준 건당 30만원, 월 상한액 1백만원

▶ 과장: 징수팀장의 평균, 팀장: 팀원의 평균, 총괄담당: 상한액 50만원 지급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에 따른 징수 : 100분의1(5백만원 限)

○ 결손 체납징수: 부과기준 건당 3천만원, 월 상한액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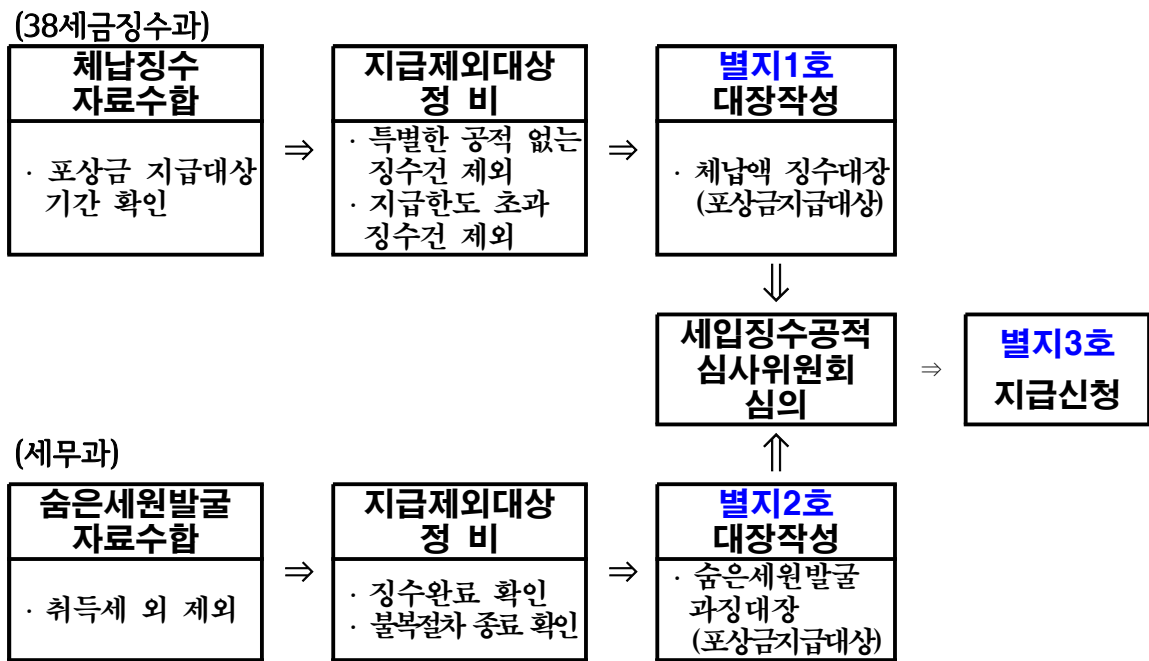
◆ 지급방법(위원회 의결사항)

○ 직접징수와 공동징수로 구분하여 포상금 지급

▶ 직접징수: 직접 납부독려 등 강제징수분을 성과인정 및 기여도 비율로 지급(담당, 팀장, 과장)

▶ 공동징수: 각종 예고문발송, 체납처분 일괄 예고 등 6개 사항을 공동 노력으로 강제 징수분에 대한 성과인정 및 배분 비율로 지급 (공동징수자 모두에게 지급)

○ 체납징수 사유별로 성과인정(60%~100%) 및 기여도에 따라 지급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암호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2011.3.29.))에도 부합하고, 공공기관의 서류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2011. 3. 29.)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행정안전부 또한 2011년부터 관공서 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서울시는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던 바, 향후 재무국은 이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관련 별지 서식이 2006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바, 관련 대장의 필수 기재 사항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